



노스캐롤라이나주  
평가위원회

의제:

고위당국결정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N.C.Gen.Stat. §96-15(e)에서,  
이원인은항소서류번호의항소심판(이름)의결정에대한**의항소**로써노스캐롤라이나주상무  
부,고용안전부의항소섹션에인지된것을고려하기위하여평가위원회(“Board”)앞에제기되  
었습니다.

원고의항소로인정되는서류에서,항소심판앞에자격및/또는실격문제에관해항소심  
판이내린결정에관해원고는이의표현하지않는것으로보입니다.더나아가원고는본부의  
혜택무결성/혜택지급통제섹션(“BPC”)에서원고에게보낸초과지급통지또는초과지급결정  
에대해서도이의표현하지않는것으로보입니다.  
BPC 는원고가본부에서보상받고자하는혜택초과지급을수령하였다고원고에게통지하였  
습니다.기타정보이외에,초과지급통지또는초과지급결정에는본부에서원고가수령하였다  
고주장하는발생한초과지급유형,초과지급이발생한기간,그리고초과지급혜택의액수가명  
시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문서에는원고가단순히(그가)  
(그녀가)받을자격이없던실업보험혜택의초과지급액을상환하여야한다는법규정을본부  
가면제해야할이유에대해표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납니다.그러하여,원고는항소결정,초과  
지급통지,또는초과지급결정에도전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나지만,단순히혜택초과지급  
상환의면제를모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납니다. N.C. Gen. Stat. § 96-  
4(w)에의거하여,위원회가아닌본부는,혜택의초과지급상환을면제할권한을가집니다.

법의규정:

2013 년 6 월 30 일이후에제기된클레임의경우,  
원고는이후항소에서취소된행정또는사법결정에서수령된급여의상환대상이됩니다. N.C.  
Gen. Stat. § 96-  
18(g)(2).본부는혜택의초과지급의상환을요구할수있기이전에,초과지급이있었다는그결정  
에대한통지를원고에게제공해야합니다.N.C. Gen. Stat. § 96-18(g)(3)b;04 N.C. Admin. Code  
24B .0601.



본부는 언제든지 초과지급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부는 또한 원고에게 혜택의 초과지급이 있었는지를 결정할 행정청 문회를 위한 합리적 기회를 원고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고위당국 결정번호

3 페이지 중 2 Page Two of Three

N.C. Gen. Stat. § 96-18(g)(3)b.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만일 본부가 원고는 혜택을 초과지급 받았고, 초과지급이 발생하였다는 판단 또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경우, 본부는 원고에게 초과지급 상환을 위한 청구서를 우편 발송할 것입니다. N.C. Gen. Stat. § 96-18(g); 04 N.C. Admin. Code 24B .0602.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본부는 N.C. Gen. Stat. § 96-18(g)(2)c. 에 따라 발생하는 사기성 없는 초과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N.C. Gen. Stat. § 96-

4(w). 정당한 사유란 실사를 시행함에 있어 법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법적 변명이 되는 실질적인 이유이어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A .0105(26) 를 참조하십시오. 고용안전법은 본부가 허위 초과지급을 면제받기 위한 어떠한 요청이나 청원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N.C. Gen. Stat. § 96-18(g)(2)(c); 04 N.C. Admin. Code 24B .0702.

더 나아가, 본부는 적격 또는 자격의 문제에 관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때까지 혜택의 초과지급을 면제할 어떠한 요청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정은 (1) 항소가 없었던, (2) 적시 항소가 없었거나, 또는 (3) 항소 권리가 소진되었을 때에 최종이 됩니다.

**법의 결론 :**

원고는 본부로부터 받은 혜택 초과지급의 상환의 면제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기록에서 나타납니다. 위원회는 본부에 빚진 초과지급금의 상환을 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신, 본부의 차관이 BPC 에게 초과지급 면제를 위한 요청이나 청원을 해결할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항소 심판의 결정에 불만을 갖고 N.C. Gen. Stat. § 96-15(c). 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없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원고가 혜택 초과지급을 수령하였다는 BPC 의 결정에 불만을 갖고 N.C. Gen. Stat. § 96-18(g)(3)b. 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도 없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따라서, 본부의 항소 섹션에서 잘못된 인정된 항소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혜택 초과지급의 상환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 원고는 초과지급 통지 또는 초과지급 결정에 제공된 지시 사항에 따라 BPC 에 초과지급 면제에 대한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 요청에는 원고가 본부로부터 하여금 면제 요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기를 바라는 모든 증거 및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B .0701.

본부의 항소 섹션에서 잘못된 인정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서류 번호의 항소 심판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차관의 피지명자가 실업보험 혜택의 초과지급을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결정한 것은 **최종적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류는 혜택의 초과지급의 면제 요청으로 적절한 처리를 위해 BPC 로 전달될 것이 명령됩니다.

평가 위원회의 의원 Fred F. Steen, II 및 Stan Campbell 이 항소에 참여하여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평가 위원회

---

위원장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 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 96-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항소 제기:

결정 전달: